

고 발 장

고 발 인 1.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대리인 임자운 변호사

2.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피고발인 1. 권오현(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2. 성명불상(2014. 6.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3. 방하남(2014. 6.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4. 이기권(현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이유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구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1. 피고발인

피고발인 1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발인 2는 2014. 6.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이「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안전진단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합니다)를 제출할 당시, 지청장이었던 자입니다.

피고발인 3은 2014. 6. 은수미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자입니다.

피고발인 4는 2016. 6. 강병원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자입니다.

2. 이 사건 보고서 작성 경위

2013. 3.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아산사업장에서 혼합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나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¹⁾)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2013. 4. 22.부터 6일간 동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와 고용노동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진단 경위에 대하여는, 첨부자료 1.의 공문 참조)

안전보건진단명령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아산사업장에 대해서만 행해졌으며, 명령의 이유는 2013년 3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아산사업장에서 발생한 혼합가스 누출 사고 와 관련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근원적인 안전보건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법원제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발송 공문(첨부자료1.) 내용 중

3. 이 사건 보고서 제출 경위

가) 2014. 5.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근로자였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 씨의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산재소송을 담당하던 서울행정법원(행정5 단독)은 공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발인 2.(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비슷한 시기(2014. 6.)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국회의원도 직업병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 LCD 생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피고발인 3.(고용노동부)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 2, 3은 각각 2014. 6. 경 법원(첨부자료 1)과 은수미 의원(첨부자료 2) 측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가려진 보고서로서 그 내용을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반쪽짜리 보고서에 불과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아산사업장으로부터 종합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유하고는 있으나, 동자료를 생산한 당사자(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보고서에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리고 제출해야 하는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제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발송 공문(첨부자료1.) 내용 중

나) 이처럼 삼성 LCD 생산공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자료의 은폐가 계속 논란이 되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도 2016. 6.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을 피고발인 4.(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첨부자료 3.)

4. 보고서에 대한 위·변조 행위

앞서 법원과 은수미 의원 측에 제출된 보고서(첨부자료 1, 2)와 이번에 강병원 의원 측에 제출된 보고서(첨부자료 3)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피고발인 2, 3, 4는 모두 법원과 국회의 보고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자신이 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해당 보고

서를 다시 제출받은 후 그것을 그대로 고용노동부 명의로 법원과 국회에 보냈 습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첨부자료 1.)의 하단에 보면 삼성 측이 기재한 결로 보이는 문서 관리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16년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 (첨부자료 3.)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가 하면 하단에 역 시 삼성 측이 기재한 결로 보이는 문서 관리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2016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보고서 제출 경위에 대해 시인 하였음]

둘째, 이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보고서 ‘총평’에 해당하는 내용 중 상 당부분을 직접 수정하였습니다. 2014년 법원,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첨부자료 1,2)와 2016년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첨부자료 3) 모두 내용이 위·변조된 보 고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변조된 내용은 총 30여건이 확인되고, 자세한 내 용은 첨부자료 4.에 정리하였습니다.

[예컨대 2014년에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첨부자료 1.)의 74쪽과 2014년에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첨부자료 2.)의 66쪽을 보면 “(5.2.) L8 공장 위험 요 인 : 4건”이라는 기재 하에 총 5개 행으로 구성된 표가 있으나, 2016년에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첨부자료 3.)의 239쪽 이하를 보면 “(5.2.) L8 공장 위 험 요인 : 11건”이라는 기재 하에 총 11개 행으로 구성된 표가 있음. 그 표 의 1, 5, 6, 7, 8, 9, 10행이 2014년 제출된 보고서에는 삭제된 것]

[또한 2014년에 법원과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 중 ‘(5.4)U/T 공장 위험요인’ 표(첨부자료 1. 80-81쪽, 첨부자료 2. 72-73쪽)의 5, 11행에 해당하는 내용 이 2016년에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 중 ‘(5.4)U/T 공장 위험요인’ 표(첨부자 료 3. 246-247쪽)에는 삭제되어 있음]

삼성 측은 미디어오늘과 한겨레의 취재 과정에서 직접 보고서를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열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우다가 실무자의 착 오로 잘못 수정됐다“

- 한겨레 측에 밝힌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의 해명(첨부자료 5.)

“외부기관 제출 시 영업비밀 사항을 가리게 되는데 2014년 당시 실무자가 불찰로 인해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가리는 처리를 하지 않고 삭제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 미디어오늘에 밝힌 삼성전자 관계자의 해명(첨부자료 6)

5. 결론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자사 사업장(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진단 결과(이 사건 보고서)를 아무 권한 없이 수정·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보고서가 산재소송 중인 법원과 국정감사 중인 국회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보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과 국회의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신이 보고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피감독 사업장으로부터 다시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그렇게 제출된 보고서가 피감독 사업장에 의하여 직접 삭제·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채 고용노동부 명의로 법원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는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한 문서 위조(혹은 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 할 뿐 아니라 조작된 보고서 제출로 법원의 재판업무와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의 범죄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15.

고발인 반도체노동자와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대리인 변호사 임자운)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검사장 귀중

첨부자료

1. (2014 법원 제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안전진단 보고서
2. (2014 국회 제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안전진단 보고서
3. (2016 국회 제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안전진단 보고서
4. (표)보고서 수정·삭제 부분 정리
5. (2016. 11. 30. 자 한겨레 기사) “국회 제출 보고서 뜯어고친 삼성, 아무 조치 안하는 고용부”
6. (2016. 11. 29. 자 미디어오늘 기사) “국회도 속였나? 삼성전자, 산재소송 자료 변조 논란”